|  |  |  |  |  |
| --- | --- | --- | --- | --- |
| 자격조건 확인 표 - 구분, 용도, 제출서류, 발급처, 비고로 구성 | | | | |
| 구분 | **용도** | **제출서류** | **발급처** | **비고** |
| 공통 | 연령확인 | 실명확인증표 | 주민센터 등 | 제시 필요 |
| 재직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2) | 건강보험공단 | 앱을 통한 신청 시, 스크래핑이 성공할 경우 제출생략 가능 |
| (근로소득) 소득증빙서류  (필요 시 다음 중 택 1)  ※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시에만 인정 1)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직장 |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홈택스)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연금공단 |
|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3) | 금융기관 |
| 기타 급여내역 확인서 4) | 직장 |
| 근로계약서 5) |
| (정부지원금, 장학금) 소득확인 대체서류 | 통장거래내역 및 확인서류 6) | 금융기관 및 각 발급처 |
| 사업자확인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 7) | 국세청(홈택스) |
| 군입대예정 확인 (추가거치기간 희망시)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 주민센터(정부24) | 희망자 제출 필요 |
| 기간제, 단시간 근로 여부 확인 (필요시) | 근로계약서 | 직장 | 해당자 제출 필요 |
| 고소득 여부 확인 (필요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분) (발급불가 시 미과세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 불가) | 해당자 제출 필요 |
| 미취업청년 사회초년생 | - | - | - | 제출서류 없음 |
| 대학(원)생 | 대학(원)생 해당 여부 확인 (해당 시 다음 중 택1) | 재학증명서 | 대학(원) | 해당자 제출 필요 |
| 휴학증명서 |
| 졸업유예증명서 등 |
| 학점은행제 학습자 | 현재 학점은행제 수강 중인지 확인 | 학점은행제 수강증명서 등 |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 해당자 제출 필요 |
| 12학점 이상 수강이력 여부 확인 | 학점인정증명서 | 평생교육진흥원 | 해당자 제출 필요 |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한부모가족 가구 및 조손가족 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정부24) | 보증료 차등적용(0.1% 적용)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적 제출 필요 |
| 다문화가족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등록 장애인 (해당 시 다음 중 택1) | 장애인등록증 | 주민센터 |
|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해당 시 다음 중 택1)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
| 근로장려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또는 결정통지서 | 국세청(홈택스) |
| 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센터(복지로) |

1) 의료수급자(의료보호대상자) 등 건강보험 미가입 대상 등은 수급자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제출  
2) 은행직인필(인터넷뱅킹 출력본은 미인정), 급여 입금자명이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  
3) 재직 중인 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4) 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확인 불가 시 근로계약서 제출  
5) 장학금은 등록금 용도를 제외한 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에 한해 인정되며 장학증서,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 정부지원금은  
취업활동과 연계된 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수당 등)에 한해 인정되며 참여확인서 등을 제출  
6) 사업자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스크래핑 실패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모바일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실증명 조회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탭에서 신청하여 발급 가능

**자금용도 인정기준: 모든 특정용도자금은 보증신청일 이전에 필수 발생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을 인정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향후 9개월 소요자금까지 월 최대 100만원 한도로 보증 (만원 단위에서 올림)  
- 자금용도 확인서류 상 이용자 및 지출자가 보증신청인 본인인 경우에만 인정(가족 명의의 임대차계약, 가족 의료비 등은 모두 불인정)  
- 특정자금용도 중 지출처가 해외이거나 외화결제 건은 불인정  
　(단, 이용자가 자금용도 계획서 상 본인의 학업 및 취업과 연관성이 높음을 소명한 자격시험 응시료의 경우 해외 결제건도 인정.  
　 단, 환율은 응시료 결제 승인일 KEB하나은행 송금 보낼때 기준 적용)

**< 보증신청일 이전 필수 발생사유 >**

|  |  |  |
| --- | --- | --- |
| 보증신청일 이전 필수 발생사유 - 구분, 필수 발생사유, 비고내용으로 구성 | | |
| 구분 | **필수 발생사유** | **비고** |
| 학업·취업 준비자금 | 학업 및 취업준비자금 납부 완료 | 수강료는 현재 수강 중인 경우 인정 1개 과목만 인정 대학교 등록금 불가 |
| 주거비 |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완료 | 심사일 이전까지 보증금 완납 필수 |
| 의료비 | 의료비 납부 완료 | 미용·성형 목적 의료비는 제외 |

**자금용도 제출서류 : 필수기재내용 누락 시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자금용도 확인 표 - 구분, 제출서류, 필수기재내용으로 구성 | | |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기재내용** |
| 학업·취업 준비자금 | "수강증/응시표" 및 "수강료/응시료 영수증" | 수강자/응시자(신청인), 기관명, 수강/응시내용, 수강기간/응시일자, 지출금액 |
| 주거비\* | 주택임대차계약서(원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보증금완납 영수증, 보증금·월세 통장거래내역 | 임차인(신청인), 임대인, 임차지 주소, 계약기간, 지출금액(보증금, 월세 등) |
| 의료비 | 의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 | 환자명(신청인), 의료기관명, 진료/치료내용, 진료/치료시점, 지출금액 |

※ 특정용도자금은 증빙서류를 통해 자금용도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향후 최대 9개월까지의 소요 자금을 지원하며, 증빙 불가 시 보증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필수 기재내용을 반드시 확인  
\* 주거비는 보증금이 월세의 2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묵시적연장으로 계약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거나 월세를 미납 중인 경우 불인정하며, 대리계약인 경우 위임장(공증)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